

프랑스 「반론권」 해설(3)

이 글은 Henri Blln(프랑스 대법원 명예부 재판장), Albert Chavanne(리옹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Roland Drago (파리대학교 법경제학부 교수), Jean Bolnet(파리항소법원 감정인, 출판연구 및 법률국 국장) 등 4인의 공저인 「출판법」(Droit dola presse. Librairies Techniques, 1982)에서 프랑스의 「반론권」(droit do raponse)에 관한 해설부분을 번역한 것이며, 1989년 겨울호 · 1990년 봄호에 이어 마지막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 2. 반론의 범위

30. 반론문의 길이

1881년 법에 의하면 반론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문제된 기사의 두 배 길이까지의 반론은 무료였으며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는 자가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몇몇 사람들이 반론을 악용, 신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년 9월 29일에 개정된 법은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반론은 무료이며, 반론의 길이는 문제된 기사가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50행까지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어떤 경우에는 최고 200행까지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길이의 반론문이 허용된다. 반론의 길이는 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규정된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 반론문에 기입된 주소, 인사말, 관습적 문구 등은 서명과 마찬가지로 반론문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최대한으로 허용된 길이를 초과하는 반론문은 무조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양만큼의 일부분만을 게재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긴 반론의 게재를 요구 받은 신문은 그 반론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게재할 수도 있다. 어떤 법규정도 접수된 반론문의 일부분을 게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게재 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삭제된 반론문은 전문인 것처럼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반론문을 그릇되게 삭제하여 게재했을 경우, 신문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다시 올바른 반론문을 게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31. 반론문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 계산

반론문의 길이를 계산할 때 문제된 기사가 담겨 있는 본문과 연관되는 제목이나 삽화가 차지하는 공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문제된 기사가 전체지면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 일부분에 한정된 경우, 이 일부분만을 고려하여 반론의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반론의 길이의 판단은 사실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판사는 반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은 그것에 관해 통제할 것이다.

32. 반론청구와 반론의 복수성

여러 기사가 동일한 호에서 문제된 경우, 각 기사에 대해 허용된 반론문의 길이를 모두 합하여 반론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의해 여러 호에 걸쳐서 문제된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반론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된 간행물의 각호 모두에 대해 반론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두 기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론은 반드시 총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여러 호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반론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법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 반론권의 행사

33. 누가 행사하는가?

반론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보면 반론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모든 반론은 거부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반론권은 주관적,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이다. 마찬가지로 가명으로 된 반론도 거부할 수 있다.

34. 반론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가?

반론은 발행인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944년 5월 26일 법률과는 달리, 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발행인의 이름이 아니라 편집인의 이름이 쓰여진 경우에는 그 편집인은 반론게재거부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35. 반론문의 발송

반론문의 발송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법적규정이 없다. 반론문이 제대로 보내졌는가, 반론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어려움이다. 일반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달관을 통해 반론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한 등기우편을 이용해도 좋다. 만약 발행인이 등기로 보내진 반론문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판사는 이 수령거부가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론게재거부죄가 성립된다. 발행인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반론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반론청구인에게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전보로도 반론문을 보낼 수 있다는 결정이 있었다. 반론문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 명백하고, 그 반론문과 문제된 기사와의 관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반론게재를 요구 받은 신문은 반론문이 집달관을 통해 보내졌다는 등의 사실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 집달관을 통하는데 드는 비용은 반론청구인이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집달관이 착오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 이 착오가 반론게재거부의 합법성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36. 반론청구기간

반론청구기간은 문제된 기사가 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시효기간의 중단이나 정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의 모든 반론게재강제명령은 거부될 수 있다.

반론게재청구시효와 반론게재거부죄의 시효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반론게재거부죄의 시효는

1881년 법의 다른 모든 위법시효처럼 제 65 조에 근거하여 반론이 게재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7. 반론문의 게재

1881년 법 제 13 조는 발행인이 반론게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반론을 게재해야만 하는 기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간지의 경우는 반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재해야 한다. 일간지가 아닌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반론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후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해야 한다. 만약 반론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호가 발행될 경우는 그 다음 호에 게재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반론문은 적어도 신문이 인쇄되기 6시간 전에 보내져야 한다(선거가 끝나기 전에 반론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게재는 합법적인가? 선거가 끝났으므로 반론게재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제 3자가 신문인쇄시간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 1881년 법 제 13 조는 선거기간 동안에는 발행인이 신문인쇄시간을 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 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발행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6시간의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반론문은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활자로 게재되어야 한다 문제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독자들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단순한 규정은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된 기사가 6면에 게재되었었는데 반론을 9면에 게재했을 때 대법원은 합당한 처리였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반론은 독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그 반론게재는 법 제 13 조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활자가 아니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재되지않는 반론은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론문은 문제의 기사가 게재되었던 지면이나 그 출판물 내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절대적인 평행관계가 요구되며 만약 적당히 수습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간행물이 아닌 다른 간행물에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는 것은 바람직한 반론게재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이와 같은 경우, 반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론문 전체를 거부하는 편이 오히려 정중한 행위가 된다. 반론문이 지나치게 길어서 삭제 후 게재해야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론게재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게재거부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반론문 증거부가 인정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 게재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

39. 연속적인 반론

반론게재거부가 합법적인 경우,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내면 반론권자는 처음 반론문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반론게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반론도 판결에 의해 다시 기각된다 해도, 이 판결은 반론청구 유효기간 내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반론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반론게재가 거부되면 3개월 이내에 반론교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게재요구도 거부된 경우, 새로운 반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번씩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반론문과 함께 새로운 논평이 게재된다면, 반론청구인은 다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화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론과 동일하다. 연속적인 반론이 갖는 유일한 한계는 부당하게 반론을 연장하려는 권리의 남용이다 게재된 반론문에 아무 의미없는 실수, 인쇄과정에서의 오식, 철자법의 실수 등이 있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연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제 4 장 반론권의 제재

40. 비난받을 만한 사실

정기간행물이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론을 게재하지 않는 것은 「게재거부」이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결은 반론문이 지연 또는 삭제되어 게재되거나 원기사와 다른 지면이나 활자로 게재되는 경우 등도 반론게재거부와 동일시한다. 이 모든 행위는 민사상, 형사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 1. 민사상의 제재

41. 손해배상

게재거부는 일반적으로 무형의 손해를 야기한다. 신청인들은 1 프랑의 상징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은 그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 손해배상은 일반법에 따라 고등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시효와 공소시효의연대성에 따라, 민사소송은 게재거부가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론게재거부에 대한 손해배상과 피해에 대한손해배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후자의 경우,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이면 손해배상청구기간은 30 년이다 한편, 모욕이나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청구기간은 시효의 연대성에 따라 3 개월이다.

42. 게재의 강요

반론게재거부에 의한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신문을 상대로 반론문게재를 요구하는 강제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에 의한 게재는 형벌이 아니다.

43. 게시

민사소송법 제 1036 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등법원에 정기간행물측의 경비부담으로 게재거부에 대한 선고결정문의 게시나 게재의 명령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야기된 손해의 성격에 따른 특별한 처벌이다.

44. 면책

게재거부죄에 대한 면책은 반론권 청구의 유효기간내에 있을 경우에는 반론게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면책은 제 3 자나 손해배상청구인의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5. 권리의 포기

반론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만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론권은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고, 반론권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반론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며 그 효력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해서 반론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2. 게재거부에 대한 처벌

46. 게재거부의 형태

반론게재거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언론사에 보낸 반론게재요구에 대한 언론사의 거부로, 이는 평상시건 선거기간이건 간에 단순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두번째는 게재를 명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다. 제 13 조에는 특별한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지만, 평상시에 이러한 거부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보상에 앞서 반론을 게재하라는 강제명령이 행해 진다. 만약, 선거기간 중에 법원의 반론게재명령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제 13 조는 이러한 불복을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6 일 이상 3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 프랑 이상 8,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8 년에 개정된 형법은 경범죄로 간주하던 게재거부를 구류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언론사 발행인이 게재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위협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게재거부 위반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므로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는 1881 년 법 제 48 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출판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출판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절차는 1881 년 법제 47 조와 그 다음의 조항에 명시된 특별소송절차에 따른다.

47. 소송절차

게재거부가 단순한 위반으로 처리될 때는 그 관할권은 검찰에 있으나 경범죄로 처리될 때는 경범죄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피고인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한편, 권리침해가 발생한 지역 지방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즉,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과 신문이 보급되는 모든 지역에 있는 법원들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기소는 보통법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의해 시작된다. 이 소환장에는 반론사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기간에는 법원판사의 특별한 명령만 있으면 소환장은 곧 교부된다. 소환장은 게재거부죄의 유일한 책임자인 출판물의 발행인에게 반드시 보내져야 한다. 게재거부가 경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주필이나 경영인들이 공모한 증거가 있으면 이들도 기소될 수 있다. 소송제기인은 원칙적으로 반론게재방침을 결정한 해당 언론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게재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제기된 소송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반론청구권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해당 언론사의 이사회를 고소할 수 있다. 1881년 법 제 53 조는 다른 모든 출판법 위반과 같이 게재거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소환장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전달된다. 게재거부위반은 5급(400 프랑 이상의 벌금)에 상당하는 위반이다. 게재거부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소환한 지 1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게재를 명하면 그 판결은 항소에 관계없이 게재에 대한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기간에도 마찬가지다. 항소는 법원 서기관가 공고한 지 1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도과한다고 해서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게재거부의 시효는 출판법 위반의 시효와 같기 때문이다. 즉, 1881년 법 제 65 조에 따르면 그 시효는 3개월이다.

48. 처벌

게재거부죄가 성립될 경우, 180 프랑 이상 1,800 프랑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선거기간에 반론게재명령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6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 프랑 이상 8,000 프랑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론

이러한 소송절차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소 진행이 느릴 수 있다. 신문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만약,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효과적이며 반론권 행사에 보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반론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론권의 존재 자체는 다른 모든 종류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예방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반론문들은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독자투고」의 형태로 게재되고 있다. 반론문게재의 요구는 대체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